

---

# 2023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

2023. 9.



보건복지부

# 목 차

1. 추진 개요 .....	1
2. 추진 내용 .....	1
3. 홍보 방안 .....	3
4. 추진 일정 .....	3
붙임1. 기관별 세부 추진일정 .....	4
붙임2. 기관별 세부 추진사항 .....	5
붙임3.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지침	13
별지1.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계획 .....	18
별지1-1.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명단 .....	19
별지1-2. 시도 상황근무자 명단 .....	21
별지2.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실적 .....	22
별지3.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	23
별지4.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에 대한 점검결과 .....	25

## 1 추진 개요

- (목적) 추석 명절 기간 중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진료공백 방지
- (기간) '23.9.28.(목) ~ '23.10.3.(화) (6일간)
-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기타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 (관련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

## 2 추진 내용

-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 응급의료기관(413개, '23.7월), 응급의료시설(109개, '23.7월)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
  -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 중 신청\*을 받아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운영

\*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신청

※ 필요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지정 기준 및 연휴 응급진료 내용 >

기 관	지정 기준	연휴 응급진료 내용
응급의료 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라 旣지정·운영 * 응급의료기관 413개소('23.7월 기준)	· 24시간 응급실 운영 · 필요 시 외래 진료
응급의료 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旣지정·운영(기존 17개 취약지 당직 의료기관 포함)	· 24시간 응급실 운영 · 필요 시 외래 진료

기 관	지정 기준	연휴 응급진료 내용
非응급의료 기관·시설 (기타 병·의원)	<p>&lt;문 여는 병·의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신청 받아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지정 및 운영</li> </ul> <p>&lt;당직의료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정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한 날짜·시간에 외래진료</li> </ul>
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2만명 당 1개소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한 날짜·시간에 약국 운영</li> </ul>
보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보건법」에 따라 旣지정·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 진료 실시 및 야간 당직근무 유지</li> </ul>

○ 중앙 및 지역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 (중앙)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에 설치·운영\*, 응급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다수사상자 발생으로 응급의료지원 필요 시 상황 총괄,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진료실적 파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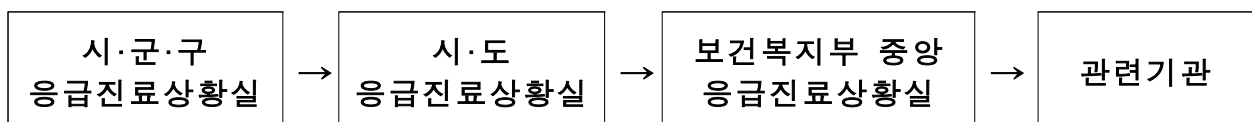
\* 09:00~18:00 응급의료과 내 근무, 18시 이후부터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안내 실적 및 운영 현황 등

- (지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추석 연휴 지역 응급진료대책 수립·운영,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약국 운영 현황 점검(유선 또는 방문), 시·도 및 보건복지부로 상황 보고

\* 연휴기간 내 각 시·도 근무자는 매일 16:30까지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상황입력 후 보건복지부 유선 보고

< 보고체계(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이용) >



## ○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조치계획

- (목적)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가동시켜 초기대응 및 상황관리
- (복지부) 다수사상자 발생현황 종합, 필요 시 의료지원 규모 결정 등 재난의료지원 총괄
-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119상황실과 정보 공유하며 다수 인명피해 발생 모니터링
- (지자체) 상황 발생 시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하여 현장응급의료 지원

## 3] 홍보 방안

- (유선)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
- (인터넷)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http://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복지부·지자체 홈페이지, 주요포털에서 '명절진료' 등 검색

## 4] 추진 일정

- 계획 수립·통보 : '23년 8월 5주
-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취합 및 관련 기관 통보
  - (1차) '23년 9월 14일(목) / (2차) 9월 21일(목)
-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 '23년 9월 28일(목) ~ 10월 3일(화)
- 운영 결과 최종 보고 : '23년 10월 16일(월)

【붙임1】

**기관별 세부 추진 일정**

기 관	내 용	추진 일정	
보건복지부	⇒ 시·도 중앙 응급의료센터	1. 추석 연휴 응급진료 계획 수립·통보	2023. 8. 31.(목)
	⇒ 중앙응급의료 센터	2. 선별진료소 운영자료(홈페이지 주소 등) 송부 * 중수본 의료대응팀 협조	2023. 9. 18.(월)
	⇒ 구급상황관리 센터 (119)	3.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통보	2023. 9. 22.(금)
	⇒ 보건복지상담 센터(129)	4.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통보	2023. 9. 22.(금)
	⇒ 청와대, 국무 조정실 등	5. 응급진료 일일 상황보고	연휴 당일 18:00
	⇒ 내부보고	6. 연휴기간 상황실 운영결과 최종보고	2023. 10. 16.(월)
중앙 응급 의료 센터	⇒ 보건복지부	1. 연휴 응급진료계획 제출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정보 입력 및 안내시스템 구축(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023. 9. 1.(금)
	⇒ 시·도	2.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입력 교육(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2023. 8. 31.(목) ~2023. 9. 8.(금)
시·도	⇒ 보건복지부	1. 연휴기간 시·도별 응급진료계획 제출 - 문 여는 병원·약국현황 1차 입력 완료 - 문 여는 병원·약국 운영기관 입력 마감 * 입력 시, <b>비고란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또는 조제) 가능 기관 여부 기재</b>	2023. 9. 12.(화) 2023. 9. 14.(목) 2023. 9. 21.(목)
		2.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운영실적 (유선 보고 병행)	연휴 당일 16:30
		3.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점검 결과 제출	2023. 10. 10.(화)

【붙임2】

기관별 세부 추진 사항

(1) 보건복지부

- 명절 연휴기간 응급진료계획 수립
- 의사회·약사회 등 관련 단체 협조 요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협조 요청
  - 연휴기간 동안 지정된 문 여는 병원·약국 안내 요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문 여는 병원·약국 명단 게시
- 중앙응급진료상황실 설치·운영 및 보고
  - 운영기간 : 2023. 9. 28.(목) ~ 10. 3.(화) (09:00~18:00)
    - \* 18시 이후부터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
  - 상황 총괄, 시·도 응급진료실적 파악·보고(당일 18:00 까지)
  - 주요 사건·사고 등 인명피해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2)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 실시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정보 입력·안내시스템 구축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대상 문 여는 병원·약국 명단 등 시스템 입력 교육\* 실시('23.8.31.~'23.9.8.,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문 여는 병원·약국 명단 및 시·도 상황근무자 명단 입력 방법 등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대국민 안내시스템\* 구축
  - \* 홈페이지(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
- 연휴기간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지원반 운영('23.9.28(목).~10.3.(화))

### [3] 광역지방자치단체

- 시·도별 연휴 응급진료계획 수립·시행
  - 시·도는 자체 연휴 응급진료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련기관에 통보
    - \* 보건복지부에도 2023.9.12.(화)까지 동 계획을 보고
  -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인력, 구급차 동원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하도록 조치
  - 대규모 환자발생 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즉각 대처, 상황 및 주요 조치내용을 보건복지부 상황실로 통보
  - 관내 시·군·구의 응급진료계획 점검·조정
  - 시·군·구로부터 취합된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운영 명단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또는 조제) 가능 기관 여부 포함) 및 시·도 상황근무자 명단을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이하 '시스템')에 '23.9.14.(목)까지 입력
    - 수정사항 발생 시 '23.9.21.(목)까지 입력 마감
    - 시·도 담당자 : 관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계정 신청·등록
      - \* 별지 1, 1-1, 1-2호 서식 참조 / 관련 문의: 중앙응급의료센터(02-6362-3580)
  - 명절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원·약국 운영실적을 당일 16:30까지 시스템으로 일지 제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 의약기관 평시 진료정보 추가입력

-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운영 명단에 더불어 의약기관 정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시 진료정보 입력\*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의 협조 필요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http://portal.nemc.or.kr>) [의료기관관리] → [의약기관 운영시간 갱신등록]

- ◆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의약기관 진료정보를 수집하여 응급의료포털 E-gen(홈페이지)과 응급의료정보제공(앱)으로 제공하고 있음
- ◆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1회 유선 확인 등을 통하여 질 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시로 변경되는 기관정보를 일일이 통화하여 확인하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음

## ○ 연휴 응급진료 관련기관 사전 협의

- 관할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휴기간 응급진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입력 교육('23.8.31.~'23.9.8.)에 보건소 담당자가 참여토록 협조

##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지정·통보

- 각 시·군·구(보건소)에서 수립한 응급진료계획에 따라 문 여는 병원·약국 지정의 적정여부 검토
  - 시·군·구가 지정한 문 여는 병원·약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도가 추가 지정
  - 시·도는 추가 지정한 문 여는 병원·약국에 대한 직접통보가 어려울 경우 각 보건소가 지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조치
-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지침(붙임3) 참고
- 응급의료기관(시설),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명단(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또는 조제) 가능 기관 여부 포함)을 시·도 홈페이지 게재(9.21.(목)까지)

◆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 지정일자에 진료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시·군·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시·군·구는 시·도, 중앙응급 의료센터 및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응급진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이 수정 되도록 조치

### ○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설치·운영

- (운영기간) '23. 9. 28.(목) ~ 10. 3.(화), 09:00~18:00

\* 18시 이후부터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

### ○ 시·군·구 상황실·응급진료체계 점검 실시

- 보건소 상황실 근무 점검, 비상연락체계 확인,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및 선별진료소 운영여부 점검

###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점검에 대한 조치

- 불이행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응급·당직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가능, 非응급·당직의료기관 등의 경우 행정지도 요망

- 불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사항(별지 제3호서식) 및 약국 점검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2023.10.10.(화))

\* 보건복지부에서 의협·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불이행 기관 통보 예정

## (4) 기초지방자치단체

### 1] 보건소·보건의료원

#### ○ 관내 연휴 응급진료계획 수립·시행

- 시·군·구는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로부터 통보받은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을 조정하여 지정하고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보고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이 지정일자에 진료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시·군·구와 협의를 거쳐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복지부에 보고
  - 문 여는 약국은 가급적 인근 문 여는 병원과 동시에 운영하도록 조정, 지역별 실정에 맞게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시·군·구는 시·도가 추가 지정한 문 여는 병원(당직의료기관 포함) 및 약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에 지정된 사항을 보고
- 연휴기간 응급진료계획과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현황(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또는 조제) 가능 기관 여부 포함)을 취합하여 시스템에 입력 완료 후 시·도에 보고
- 시·군·구(보건소) 담당자 : 관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계정 신청·등록
  - \* 관련 문의 : 중앙응급의료센터(02-6362-3580)
- 보건소 진료를 통한 공공의료 보장성 확보
- 시·군·구는 명절 연휴기간 자체 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명절 당일 등 취약기간 및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의 보장성 확보
  - \* 연휴기간 중 주간(09:00 ~ 18:00)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가능), 야간에는 당직근무체계를 통한 응급진료 가능하도록 유지
- 연휴 응급진료체계에 대한 홍보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명단(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또는 조제) 가능 기관 여부 포함)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이용하여 관내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의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
  - 기타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응급진료상황실 설치·운영**

- (운영기간) '23. 9. 28.(목) ~ 10. 3.(화), 09:00~18:00

\* 18시 이후부터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유지

○ **관내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현황 점검**

- 관내 응급진료계획에 따라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 여부를 유선 점검, 필요 시 현장방문 확인 병행

- 야간에 응급실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종합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반드시 응급실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응급 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실시

② **보건지소·보건진료소**

○ **필요시 보건지소 진료를 통한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

- 진료를 실시할 경우 해당사항을 사전에 적극 홍보

**(5) 응급의료기관 등**

① **권역응급의료센터**

○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 재난의료지원팀(DMAT)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재난의료지원차량 및 구급차 출동태세 확립

-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

○ **24시간 응급실 운영 강화**

- 응급실 전담 전문의 배치 및 응급환자 진료실시

② 응급의료기관(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 24시간 응급실 운영 강화

- 응급실 전담 의사 배치 및 응급환자 진료 실시
- 전문과목별 당직전문의 지정·운영하여 비상진료체계 구축
- 구급차 출동 준비

○ 필요시 응급의료기관 외래 진료개설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장과 협의하여 외래 진료 개설

**[6] 非응급의료기관·시설(당직의료기관 포함)**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운영계획을 준수하여 지정일자에 운영

- 지역주민의 진료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 운영
-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를 할 수 없을 경우 당번일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시군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후속조치
- 시·도, 시·군·구,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영 병·의원 현황이 수정되도록 조치

○ 휴무 의료기관은 인근 문 여는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 휴무기간, 인근 문 여는 병·의원 의료기관 위치 및 전화번호 기재

## [7] 약국

- 연휴 기간 문 여는 약국 운영계획을 준수하여 지정일자에 운영
  -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등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문 여는 약국 운영
  -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당번일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필요한 후속조치
  - 시·도, 시·군·구,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국 현황이 수정되도록 조치
- 휴무 약국은 인근 문 여는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 휴무 기간, 인근 문 여는 약국 위치 및 전화번호 등 기재

**【붙임3】**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지침**

□ 개요

- (목적)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 연휴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있어 국민 불편 최소화와 적정 진료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방지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등
- (내용) 명절 연휴기간 중 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 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중 최소한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운영 (필요 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 일차진료를 위한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 최소화
  - 문 여는 병·의원 인근을 중심으로 문 여는 약국을 동시 지정·운영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

□ 문 여는 병·의원

- 관련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신청 받아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지정·운영
  - \* 필요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 문 여는 병·의원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

\*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문 여는 병·의원(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 재해 또는 사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역 내에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2 이상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문 여는 병·의원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범위가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 여는 병·의원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 여는 병·의원 지정기준

- 특별시·광역시 : 시·군·구의 인구 20만명당 각 계열별 최소 1개소

\* 각 계열별 진료과목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

- 도 지역 : 시·군·구의 인구 10만명당 각 계열별 최소 1개소

\* 각 계열별 진료과목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



- 의료취약지역의 대책

- 전문과목의 중복 : 1개소의 병·의원이 다양한 과목의 진료가능한 경우 중복하여 지정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용 : 관내의 보건의료원,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지정
- 공동지정 : 시·도지사의 조정하에 인접 시·군·구와 진료권을 통합하여 지정

○ 문 여는 병·의원의 지정대상 및 진료과목

- 지정범위 : 시군구 관내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 중에서 지정
- 기본과목 : 이용자가 많고 광범위한 상병을 진료 가능한 다음의 진료과목을 계열별로 지정

계열	진료과목
내과계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소아과계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 선택과목 : 질병의 유행 등으로 인해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선택적으로 지정
- 진료과목 :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 문 여는 병·의원 지정 절차

- 지정 및 운영계획 수립

- 시·도별 문 여는 병·의원의 지정·운영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별 문 여는 병·의원의 지정·운영계획을 수립·시행

## - 관련기관 협조 및 직접 지정

- 관내의 의료인단체 또는 개원 의료인단체와 협의하여 충분한 의료기관을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 협의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서 직접 문 여는 병·의원(당직 의료기관) 지정

## - 지정사실 통보

-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휴 1주일 전에 통보·고지
- 통보내용 : 문 여는 병·의원의 지정사실, 지정일시, 지정의 취지 및 진료 불이행시의 불이익\*

\*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해당

## □ 문 여는 약국

### ○ 기본방향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인근 약국을 문 여는 약국으로 지정

### ○ 지정기준

-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최소 1개소 지정

### ○ 지정대상 및 절차

- 문 여는 병·의원 지정 지침을 준용

## □ 지도·감독

### ○ 진료 및 운영 여부의 확인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의 운영기간 동안 해당기관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방문 또는 유선 등을 이용하여 운영 여부를 수시로 확인

## □ 안내·홍보

### ○ 사전 홍보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의 지정·운영현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사전 공지

### ○ 실시간 홍보

-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http://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을 이용하여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실시간 안내
-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일자별, 시간대별 운영현황

# 별지 제1호서식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9.28.(목)	9.29.(금)	9.30.(토)	10.1.(일)	10.2.(월)	10.3.(화)
문 여는 병원	응급의료기관	소계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기타 병·의원	소계					
		병원					
		의원					
	공공의료기관	소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 여는 약국	약국						
총 계							

\*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메뉴 중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명단

○ 시·군·구

(단위 : 개소)

구분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계획(일자)				비고
					일시	일시	일시	일시	
계									
문 여는 병원	응급 의료 기관	소계							
		권역·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기타 병·의원	소계							
		병원							
		의원							
		공공의료기관							
문 여는 약국	소계								
	약국								

※ 작성방법

- 진료계획에 반드시 진료시간구분을 하여 기재
  - 진료실시할 경우는「○○:○○~○○:○○분까지, 예시) 09:00~21:00」, 미실시할 경우는 「공란」으로 작성
- 시·군·구에서 등록한 내용을 열람하는 광역시·도 인트라넷 메뉴 중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사·도 상황근무자

근무일	성명	비상연락처		비고
		사무실	핸드폰	

- \*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비상근무자] 등록 메뉴를 활용하여 제출
- \* 담당자 : 명절비상대책 담당자 등록 / 비상근무자 : 명절비상근무 해당일자 당직자 등록

## 별지 제2호서식

###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9.28.(목)	9.29.(금)	9.30.(토)	10.1.(일)	10.2.(월)	10.3.(화)
문 여는 병원	응급의료기관	소계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기타 병·의원	소계					
		병원					
		의원					
	공공의료기관	소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 여는 약국	약국						
총 계							

※ 각 시·도에서는 일일운영실적을 매일 16:30까지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메뉴 “시군구 보고서 제출현황”에서 [일지제출확인] 버튼 클릭으로 운영실적 제출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1. 점검결과**

(단위 : 개소)

일자	지역	계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기타 병의원 (당직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마감		불이행	추가	마감		불이행	추가	마감		불이행	추가	마감		불이행	추가	마감		불이행	추가	마감		불이행	추가	마감		불이행	추가								
		합계	이행			합계	이행			합계	이행			합계	이행			합계	이행			합계	이행			합계	이행			합계	이행	합계	이행	합계	이행	합계	이행
합계	사도																																				
	사·군·구																																				
	사도																																				
	사·군·구																																				
	사도																																				
	사·군·구																																				
	사도																																				
	사·군·구																																				
	사도																																				
	사·군·구																																				

※ 작성방법

- 지역 : 관할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작성
- 합계 : 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일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수
- 이행 : 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일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실제 운영한 기관 수
- 불이행 : 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일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나 실제 미운영한 기관 수
- 추가 : 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일 미운영기관이나 실제 운영한 기관 수

2. 조치사항

3. 특이사항

## 별지 제4호서식

### 연휴기간 문 여는 약국에 대한 점검결과

#### 1. 점검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지역	누계				일시				일시				일시				일시			
	마감			추가	마감			추가	마감			추가	마감			추가	마감			추가
	합계	이행	불이행		합계	이행	불이행		합계	이행	불이행		합계	이행	불이행		합계	이행	불이행	
시·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 작성방법

- 지역 : 관할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작성
- 합계 : 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일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수
- 이행 : 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일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실제 운영한 기관 수
- 불이행 : 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일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나 실제 미 운영한 기관 수
- 추가 : 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일 미운영기관이나 실제 운영한 기관 수

#### 2. 조치사항

#### 3. 특이사항